인천영종국제도시 디에트르 라메르 I (RC4-1,2BL)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688-7377**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민영주택	비규제지역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없음	3년 [최초 당첨자 발표일(2026.01.07.)로부터 3년]	없음	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청약접수일	당첨자발표일	계약체결
일정	2025.12.19.(금)	2026.01.28.(수)	2026.02.02.(월)	2026.02.05.(목)	2026.02.06.(금)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잔여세대 (무순위)	O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 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1.28.(수)**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10027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12.19.(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5000602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금회 공급 주택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된 주택형으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일 정	26.02.02.(월)	26.02.05.(목)	26.02.06.(금)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9-7번지)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인천광역시 중구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발표일(2026.01.07.)로부터 3년간 적용됩니다.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958-8,9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RC4-1,2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최고 40~49층 6개동, 총 1,009세대 중 118세대

■ **입주시기** : **2029년 10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타입)	잔여세대수	잔여세대 동·호 내역	
					동	호
2026910027	01	084.9873A	84A	118	103	301, 304, 401, 404, 501, 504, 601, 604, 701, 704, 801, 804, 901, 904, 1001, 1004 1101, 1104, 1201, 1204, 1301, 1304, 1401, 1404, 1501, 1504, 1701, 1704, 1801, 1804, 1904, 2001, 2004, 2101, 2104, 2201, 2204, 2304, 2404, 2504, 2601, 2604, 2701, 2804, 3004, 3101, 3204, 3301, 3304, 3504, 3601, 3604, 3701, 3901, 4001
					105	301, 304, 404, 501, 504, 601, 604, 704, 801, 804, 901, 904, 1001, 1004, 1101, 1104, 1201, 1204, 1301, 1401, 1404, 1501, 1504, 1604, 1704, 1804, 1901, 1904, 2101, 2104, 2201, 2204, 2304, 2404, 2604, 2701, 2804, 2901, 2904, 3001, 3004, 3101, 3104, 3204, 3301, 3501, 3504, 3601, 3604, 3701, 3704, 3801, 3901, 3904, 4004, 4101, 4201, 4301, 4501, 4504, 4601, 4704, 4801
	합 계			118		

■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사전청약/신청기준)	**084.9670A**
주택형(실제 전용면적 기준)	**084.9873A**
견본주택 등의 약식표기	**84A**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2022.07.08)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에 의해 주거전용면적 및 주택형 표기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 신청 시 사전청약 기준 주택형으로 청약신청을 해야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표**

(단위 : 원, VAT포함)

약식 표기	동호 라인 별	층수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5%	5%	10%	10%	10%	10%	10%	10%	30%
								계약 시	1개월 이내	2026-07-25	2026-12-25	2027-06-25	2028-06-25	2028-10-25	2029-02-25	입주지정일
84A	103동 4호 105동4호	3층	2	162,550,996	405,169,004	-	567,720,000	28,300,000	28,472,000	56,772,000	56,772,000	56,772,000	56,772,000	56,772,000	56,772,000	170,316,000
		4층	2	162,550,996	417,069,004	-	579,620,000	28,900,000	29,062,000	57,962,000	57,962,000	57,962,000	57,962,000	57,962,000	57,962,000	173,886,000
		5층	2	162,550,996	423,369,004	-	585,920,000	29,200,000	29,392,000	58,592,000	58,592,000	58,592,000	58,592,000	58,592,000	58,592,000	175,776,000
		6층~7층	4	162,550,996	429,569,004	-	592,120,000	29,600,000	29,612,000	59,212,000	59,212,000	59,212,000	59,212,000	59,212,000	59,212,000	177,636,000
		8층~9층	4	162,550,996	436,469,004	-	599,020,000	29,900,000	30,002,000	59,902,000	59,902,000	59,902,000	59,902,000	59,902,000	59,902,000	179,706,000
		10층~19층	18	162,550,996	448,369,004	-	610,920,000	30,500,000	30,592,000	61,092,000	61,092,000	61,092,000	61,092,000	61,092,000	61,092,000	183,276,000
		20층~29층	15	162,550,996	454,669,004	-	617,220,000	30,800,000	30,922,000	61,722,000	61,722,000	61,722,000	61,722,000	61,722,000	61,722,000	185,166,000
		30층~39층	12	162,550,996	460,869,004	-	623,420,000	31,100,000	31,242,000	62,342,000	62,342,000	62,342,000	62,342,000	62,342,000	62,342,000	187,026,000
		40층이상	3	162,550,996	467,169,004	-	629,720,000	31,400,000	31,572,000	62,972,000	62,972,000	62,972,000	62,972,000	62,972,000	62,972,000	188,916,000
	103동 1호	3층	1	162,550,996	405,569,004	-	568,120,000	28,400,000	28,412,000	56,812,000	56,812,000	56,812,000	56,812,000	56,812,000	56,812,000	170,436,000
		4층	1	162,550,996	420,269,004	-	582,820,000	29,100,000	29,182,000	58,282,000	58,282,000	58,282,000	58,282,000	58,282,000	58,282,000	174,846,000
		5층	1	162,550,996	434,969,004	-	597,520,000	29,800,000	29,952,000	59,752,000	59,752,000	59,752,000	59,752,000	59,752,000	59,752,000	179,256,000
		6층~7층	2	162,550,996	449,669,004	-	612,220,000	30,600,000	30,622,000	61,222,000	61,222,000	61,222,000	61,222,000	61,222,000	61,222,000	183,666,000
		8층~9층	2	162,550,996	464,369,004	-	626,920,000	31,300,000	31,392,000	62,692,000	62,692,000	62,692,000	62,692,000	62,692,000	62,692,000	188,076,000
		10층~19층	8	162,550,996	479,069,004	-	641,620,000	32,000,000	32,162,000	64,162,000	64,162,000	64,162,000	64,162,000	64,162,000	64,162,000	192,486,000
		20층~29층	5	162,550,996	485,669,004	-	648,220,000	32,400,000	32,422,000	64,822,000	64,822,000	64,822,000	64,822,000	64,822,000	64,822,000	194,466,000
		30층~39층	5	162,550,996	492,169,004	-	654,720,000	32,700,000	32,772,000	65,472,000	65,472,000	65,472,000	65,472,000	65,472,000	65,472,000	196,416,000
		40층이상	1	162,550,996	498,769,004	-	661,320,000	33,000,000	33,132,000	66,132,000	66,132,000	66,132,000	66,132,000	66,132,000	66,132,000	198,396,000
	105동 1호	3층	1	162,550,996	406,569,004	-	569,120,000	28,400,000	28,512,000	56,912,000	56,912,000	56,912,000	56,912,000	56,912,000	56,912,000	170,736,000
		5층	1	162,550,996	447,869,004	-	610,420,000	30,500,000	30,542,000	61,042,000	61,042,000	61,042,000	61,042,000	61,042,000	61,042,000	183,126,000
		6층~7층	1	162,550,996	468,469,004	-	631,020,000	31,500,000	31,602,000	63,102,000	63,102,000	63,102,000	63,102,000	63,102,000	63,102,000	189,306,000
		8층~9층	2	162,550,996	489,069,004	-	651,620,000	32,500,000	32,662,000	65,162,000	65,162,000	65,162,000	65,162,000	65,162,000	65,162,000	195,486,000
		10층~19층	7	162,550,996	509,769,004	-	672,320,000	33,600,000	33,632,000	67,232,000	67,232,000	67,232,000	67,232,000	67,232,000	67,232,000	201,696,000
		20층~29층	4	162,550,996	516,669,004	-	679,220,000	33,900,000	34,022,000	67,922,000	67,922,000	67,922,000	67,922,000	67,922,000	67,922,000	203,766,000
		30층~39층	8	162,550,996	523,469,004	-	686,020,000	34,300,000	34,302,000	68,602,000	68,602,000	68,602,000	68,602,000	68,602,000	68,602,000	205,806,000
		40층이상	6	162,550,996	530,369,004	-	692,920,000	34,600,000	34,692,000	69,292,000	69,292,000	69,292,000	69,292,000	69,292,000	69,292,000	207,876,000

※ 상기 금액은 특정 조망(오션뷰 등)을 전제로 금액 산출되지 않았으며, 주택형, 층, 향, 조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차 계약금 5%는 자납하며, 2차 계약금 5%는 사업주체가 알선하는 1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무이자)로 진행합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관리계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농협은행	355-0095-0779-23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PF금융지사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당사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받으며 계약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견본주택에서 현장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 계약금 미납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기타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 **(예시 : 101동 301호 계약 시 "1010301김대방")**
- 본 주택의 중도금은 당사와 대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 시,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현금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상기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자에게 전자등기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통지하기로 하며, 이 경우 잔여 분양대금은 변경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고, 만일 계약자의 계약서상의 주소지가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 후 1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서면(주민등록표등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각 분양대금의 납부기일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공급계약서에 따른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VAT포함)

구 분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	잔 금
타입		계약시	입주지정일
84A	8,580,000	1,000,000	7,580,000

■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대금 납부계좌 (계약금, 잔금)	농협은행	355-0095-0777-53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PF금융지사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 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은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비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공급가격은 확장으로 인한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나 동질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선홈통BOX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고, 이 경우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 계약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 부위는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었습니다.
- 동 배치에 의해 동일평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코니 설치 가구의 배치, 규격,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 품목 계약**
- 시스템 에어컨 및 타입별 추가선택사항(인테리어, 가전 등)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당사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구분	내용
대상자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5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조회기간 : 2026.02.05.(목) ~ 2026.02.14(토) (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제공일시 : 2025.02.05.(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 주택신청용 /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 불가.(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대리인 위임불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견본주택 비치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상세"발급)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발급)	본인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발급)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상세"발급)	배우자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 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사항 참고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 해당지역 우선공급 신청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 기록 대조일을 본인 출생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발급
주택관련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무주택소명서류	해당주택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 사실 소명 서류	자녀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제3자 대리 제출 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본인	용도에「주택공급신청 위임용」으로 직접 기재 ※ 대리인 신청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및 본인발급용으로 제출
		○	위임장	해당자	견본주택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제출)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당첨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시 : 26.02.06.(금) 10:00 ~ 13:00
-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해당서류	비고
공통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가능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사실확인서	아파트 계약용 (본인발급분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내역 포함하여 발급
	계약금 입금 영수증	계약금 현장수납 불가
제3자 대리 계약 시 (본인 외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공통서류	상기 공통서류 일체를 계약자 본인이 발급하여 대리인이 제출
	계약자의 인감도장	인감도장 날인 및 대조용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아파트 계약위임용 (계약자 본인발급분에 한함)
	위임장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대리인 도장 날인(서명)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일시 : 2026.02.06.(금) 예정 (자세한 시간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일 이체 한도 확인).

7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참고사항

-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당첨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 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 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당첨취소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으로 청약 당첨(예비입주자 선정 포함)시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으나,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5.09.07.「주택공급 확대방안」 및 2025.10.15.「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른 규제지역 LTV 축소 등 정부정책, 본인의 대출 부적격 사유 등으로 대출이 불가하거나, 계약자 별로 대출한도가 상이할 수 있으며 대출 미신청자 및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 연체료 부과 또는 계약조건에 의거하여 계약해제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총 10% 완납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을 신청이 가능하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중도금 대출의 제한 등), 대출기관의 규제 등으로 인해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제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 알선 불가 및 대출관련 제반 사항 [대출 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대출금리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대출 알선이 불가하거나 개인별 대출축소·대출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호	**디비종합건설 주식회사**	**디비주택 주식회사**	**대방건설 주식회사**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55, 제사무동 4층 407호 (대화동, 일산 디엠시티 스카이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72, 2층 209호(백석동, 아이비프라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72(백석동, 아이비프라자 5층)
법인등록번호	285011-0296538	285011-0296554	110111-0757158
대표번호	031-901-4138	031-901-3161	02-2181-9400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당사 홈페이지(http://www.detre-yj1.co.kr)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9-7번지**

■ **분양문의 : ☎ 1688-7377**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함)

※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가능하나, 경미한 설계변경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양지하시기 바랍니다.